

#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검 토 보 고

### I. 주요내용

- 신용보증재단의 업무구역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고 설립 시 발기인을 위촉하는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함으로써 재단 운영 현황과 현황 지방자치체계에 맞게 법률을 정비함(안 제5조 및 제9조제1항).

### 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박 혜 진)